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 731-6156-8 / 전송 731-65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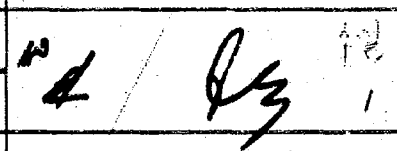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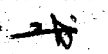
문서번호 법무 11010 - 246

시행일자 1996. 2. 12.

(정유) (제 1 안)

수신 내부 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기획관리실장	전결		
법무 담당관			
법제계장			
기안	김철수 		
			협조

제목 서울특별시버스노선조정심의회규정중개정규정 발령

1. 서울특별시버스노선조정심의회규정중개정규정을 별첨안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

첨부 훈령안 1부. 끝.

훈령제 226 호

(제 2 안)

수신 공보담당관

제목 시보게재

1. 서울특별시버스노선조정심의회규정중개정규정을 별첨안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기 바람.

첨부 서울특별시훈령 제 226 호 2부. 끝.

서울특별시장

(제 3 안)

수신 대중교통1과장

제목 훈령발령 통보

1. 서울특별시버스노선조정심의회규정중개정규정을 별첨안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토록 조치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

가. 발령예정일 : 1996. 2. 27.

첨부 서울특별시훈령 제 226 호 (생략). 끝.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버스노선조정심의회규정중개정규정

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6년 2월 21일

서울특별시장 조



서울특별시버스노선조정심의회규정중개정규정안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직제개편에 따라 버스노선조정심의회 일부 위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구성원을 보완하며, 노선조정심의배제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심의회 위원장 변경·일부 위원 명칭변경 및 교체(안 제2조).

(1) 위원장변경 : 부시장 → 교통관리실장

(2) 명칭변경 : 교통국장 → 교통기획관

(3) 교체

- 해당구청장 삭제

- 지하철공사 운영이사 → 도시철도공사 운영이사

나. 경미한 노선변경이나 사업 개선명령을 할 경우와 다른 시·도 행정구역안에서의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하기 위해 관계 도지사 와 협의할 경우 노선조정심의를 배제토록 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자동차운수사업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필요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버스노선조정심의회규정중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버스노선조정심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위원장은 교통관리실장, 부위원장은 교통기획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서울특별시 정책기획관
 2.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운영이사
 3.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
 4. 시정개발연구원 교통연구부장
 5. 교통개발연구원 도시교통실장
 6. 교통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7. 소비자보호단체의 장, 시민대표 및 조합대표 등 시장이 위촉한 자

제4조제1항중 "간사는 운수1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내버스계장"을 "간사는 대중교통1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선관리계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교통국장"을 "교통기획관"으로 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제2조(관용심사위원회의 기능)</u></p> <p><u>①삭제('95.5.15)</u></p> <p><u>②서울특별시관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시자체감사 및 조사 결과와 감사원등에서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한 관용 대상자의 처분양정을 심사한다.</u></p> <p><u>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무원교육원장으로, 부위원장은 감사실장으로, 위원은 시본청 국·과장중에서 위원회 개최시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며, 감사총괄계장을 간사로 한다.</u></p> <p><u>②생략</u></p>	<p><u>제2조(관용심사위원회의 기능) 서울특별시관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시자체감사 및 조사 결과와 감사원등에서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중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관용 대상자의 처분양정을 심사한다.</u></p> <p><u>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u> <u>.....</u> <u>..... 위원장은 시장이 지명하는 1급공무원으로,</u> <u>.....</u> <u>.....</u> <u>.....</u> <u>.....</u> <u>.....</u> <u>.....</u> <u>.....</u> <u>.....</u></p> <p><u>②현행과 같음</u></p>

신 · 구조문대조표

현행	개정안
<p>제2조(구성) ①(생략)</p> <p>②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 정책기획관 2. 서울특별시 해당구청장 3.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운영이사 4.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 5. 시정개발연구원 교통연구부장 6. 교통개발연구원 도시교통실장 7. 교통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8. 소비자보호단체의 장, 시민대표 및 조합대표 등 시장이 위촉한 자 <p>③(생략)</p> <p>제4조(간사 및 서기) ①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운수1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내버스계장으로 한다.</p>	<p>제2조(구성) ①(현행과 같음)</p> <p>②위원장은 교통관리실장, 부위원장은 교통기획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 정책기획관 2.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운영이사 3.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 4. 시정개발연구원 교통연구부장 5. 교통개발연구원 도시교통실장 6. 교통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7. 소비자보호단체의 장, 시민대표 및 조합대표 등 시장이 위촉한 자 <p>③(현행과 같음)</p> <p>제4조(간사 및 서기) ①- - - - - - - - 간사는 대중교통1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선관리계장 - - - -</p>

현행	개정안
<p>제5조 (심의사항) ① (생략)</p> <p>② <u>교통국장은</u> 심의에 앞서 노선 개편계획안 또는 노선조정안을 작성하여 심의회에 부의하고 동 의결에 따라 확정 또는 시행하여야 하며, 노선조정의 경우 운행개시전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용시민을 위한 홍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6조 (심의배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긴급 또는 임시교통정리를 위하여 버스노선의 변경 등이 필요한 때에는 심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4. (생략)</p>	<p>제5조 (심의사항)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교통기획관</u> - - - - -</p> <p>- - - - -</p> <p>- - - - -</p> <p>- - - - -</p> <p>- - - - -</p> <p>- - - - -</p> <p>- - -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 (심의배제) - - - - -</p> <p>- - - - -</p> <p>- - - - -</p> <p>- - - - -</p> <p>-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경미한 노선 및 계통변경과 사업 개선명령 사항</u></p> <p>5. <u>다른 시.도 행정구역안에서의 사업계획변경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기 위해 관계 도시사와 협의하는 사항</u></p> <p>6. (현행 제4호와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8조 (서면심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수교통수요처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서면심의에 의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제8조 (서면심의) - - - - -</p> <p>- - - - -</p> <p>- - - - -</p> <p>- - - - -</p> <p>-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기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